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9.11.1.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 강화

○ 경영지원부가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함에 있어 동 후보군에 편입될 후보 전원을 지원부서인 동 부서가 추천하고, 외부자문기관 등에 의한 추천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어려운 금융기관장 등을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으로 추천하거나 후보군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후보군 관리가 미흡하므로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후보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후보군 추천 및 제외시 후보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 내실화

○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통찰력 및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한편,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증·보고하는 절차를 갖추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정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조정토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오류 등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가 과다(소) 지급되지 않도록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자회사 임원의 성과평가기준 점검 강화

○ 자회사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항목에 당기순이익, ROA 등 재무성과를 포함하고 있어 회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와 이해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에 재무성과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성과평가기준에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